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339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5
1.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신설(정부안)	5
가. 개요	6
나. 성실납세신고제도의 대상	8
다. 성실납세신고제도의 대상 물품	10
라. 성실납세신고제도의 방법	10
마. 성실납세신고제도의 기한	13
바. 성실납세신고제도의 특례	15
2.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 (정부안)	17
3.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 (정부안)	20
4.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 (정부안)	22
5.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정부안)	25
6.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 (정부안)	28
7. 계약내용과 다른 수입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 (정부안)	32
8.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 정비 (정부안)	35
9.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의무 폐지(정부안)	39
10.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기간 연장 (정부안)	42
11. 원산지증명서(FTA외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 아·태무역협정(APTA) 세울 적용신청 시) 발급 관련 위임근거 신설 (정부안)	45
12.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 (정부안)	48
13.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53
14.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정부안)	60
15.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 (정부안)	62

16.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 (정부안)	70
17.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 (정부안)	76
18.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재산 거래내역 추가 (최은석의원안, 정부안)	79
19.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 범위 정비 (정부안)	86
20.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 (정부안)	92
21.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박성훈의원안·정부안)	94
22. 업무 민간위탁 근거 정비 (정부안)	100
23. 통관·보세분야 위임규정 등 조문정비 (정부안)	103
24. 보칙 분야 위임규정 등 조문정비 (정부안)	109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339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8. 30.
- (3) 회 부 일 : 2024. 9. 2.

나. 제안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안 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안 제21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다.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안 제42조제2항)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안 제76조제3항)

중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
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
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
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수출·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안 제235조
제1항제7호 신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
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바.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안 제254조제2항·제7항·
제8항)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
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
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
록하도록 함.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안 제264조의2제7호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아.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270조의2제2호)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신설(정부안)

현행	정부안
☐ <신설> (§9④, §38의5, §39) ※ 현행 납세신고 제도 ①(대상자) 모든 납세자 ②(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③(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④(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성실 납세신고 도입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 3천만불 미만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및 소규모 성실사업자 제외) ○ (대상물품) 수입신고한 물품* * 과세가격 결정 사전심사 (ACVA) 물품 및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 ○ (성실납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성실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 (성실납세신고·납부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시 면제하고 성실납세신고시 부여 ○ (세액정정 특례)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 ○ 시행일: 2028. 1. 1. ○ 적용례: 2028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가. 개요

-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현행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²⁾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³⁾ 납세신고 의무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으며, 현행법은 수입신고와 동시에 ‘물품별로’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⁴⁾ 과세당국은 신고납부한 사항에 대해 그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액심사’ 과정을 거치며, 세액심사는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납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수리하였다 하여 세관장이 그 신고가 적정한 것이라 인정 혹은 승인한

1)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2) 일반적으로는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경우 추상적인 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 해당 상태는 납세의무의 이행내용과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액을 확정해야 하며, 이는 납부세액의 확인과 확인된 세액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2개의 과정으로 구성됨. 위 과정을 납세의무자가 담당하는 경우 신고납부제도라하고 과세관청인 세관이 담당하는 경우 부과고지제도라함.

3)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동 제도는 1978년엔 관세신고·납부체제 도입 이후 45년 동안 변경없이 현 제도로 유지된 바 있음.

4)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⁵⁾

□ 과세당국은 세액심사 과정에서 과세과격의 기준이 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거래가격”)과 용역가액등 가산,공제 요소등을 심사하여야 함. 그러나 조사인력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이유로 관세청은 현재 제한된 수(0.8%)의 수입업체만을 대상⁶⁾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시행하여 사후 세액을 검증하고 있어 정기조사 대상 제외업체들은 사실상 세액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임.⁷⁾ 이로 인해 정기조사 제외군의 조사 시 추정비율은 정기조사 대상업체에 비해 높은 수준임.⁸⁾

□ 개정안은 세액검증 사각지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사후 세액검증을 강화하고 정확한 관세 납부관행을 정착·유도하려는 것으로서 성실납세신고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대상자, 대상물품, 신고방법, 신고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용도세를 적용 승인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원칙 아래서 용도에 따라 …… 세관장이 용도세를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서 그 물품에 대해 신고한자가 신고한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대한 신고자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수 없다”, 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판결

6) 정기관세조사대상군은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이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수출입업체 들임.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수입분야로 한정한다)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포함하지 않는다.

7) 통상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에 송품장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물품가액을 배제한 로열티, 수수료 등 용역가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세액 검증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 않는 상황임.

8) 정기조사 제외군은 업체수(99.2%) 대비 수입금액(17%)은 낮은 수준이나 조사시 추정비율(관부가세÷수입금액)은 높음 (정기조사군: 0.12%, 제외군 0.69~3.01%)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구분	내용
① 대상자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대상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수입신고한 물품 중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 물품 및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③ 방법	- 관세사등이 수입신고서에 적힌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 필요 -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관장에게 미리 적용 신청 필요
④ 기한	-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의 세액에 대해서 수입신고분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⑤ 특례	- 동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격신고를 수입신고 시에 생략하고 확정납세신고 시에 할 수 있음 - 납세신고를 한 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성실납세신고기한까지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 할 수 있음

나. 성실납세신고제도의 대상

□ 개정안은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의 대상자를 현재 정기관세 조사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대통령령 등에 따라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3천만불 미만이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로 규정하고 있고, 대상자들 중 희망하는 자에 한정하여 성실납세 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납세실적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⁹⁾

9)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및 소규모성실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성실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을 최대 45일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성실납세신고 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 세액검증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여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세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조세 채권의 일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이러한 자율적인 성실납세신고는 세액심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밀한 납세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적정 과세 및 안전 통관을 구현하고자 하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의 유사 제도와 같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통관행정의 현실적인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강구할 필요도 있음.¹⁰⁾

10) 또한 본 제도는 1978년 과세신고·납부체제 도입 이후 45년만의 제도의 변화라는 점, 영세업체들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성실납세신고제도의 대상 물품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성실납세신고제도의 대상 물품을 한정하고 있음. 과세당국은 과세가격결정사전심사물품¹¹⁾ 및 수입신고수리전세액심사물품¹²⁾을 대통령령 상에서 성실납세신고제도 대상 제외 물품으로 규정할 예정이며 두 물품 모두 성실납세신고를 이유로 관세사등의 확인을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제도 운영상 가외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라. 성실납세신고제도의 방법

- 개정안은 성실납세신고 방법과 관련하여 성실납세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성실납세신고 적용신청을 하고, 납세신고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다시 한꺼번에 납세신고(이하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동법 제86조제1항제3호¹³⁾에 따른 관세사등이 수

11) 과세가격결정사전심사제도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를 하기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함. 그 중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과격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사전심사신청을 할 수 있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는 관련 서류등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세평가분류원 및 본부세관등에서 사전심사를 거치게 됨.

12) 수입신고수리전세액심사제도는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 세액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함. 이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 세액심사가 완료된 것을 의미함.

13)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및 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성실납세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개정안과 같이 관세사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업자의 성실납세신고를 엄밀히 확인 할 경우 정확한 관세납부 관행 문화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사등이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1달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입신고가격의 경우 계약조건, 국제시세 등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입신고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1달이라는 기간이 충분치 않은 측면도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1달 이상의 성실납세신고 확인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통해 연장된 납부기한인 최대 60일에 부가적인 과세이연기간을 부여하여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성실납세신고 참여 가능 업체들은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자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무역 업체가 해당되어 지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14) 과세당국은 관세사등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 시 특수관계자, 과세과격, 품목분류, 외환거래 적정성 등을 확인하도록 관세청 고시를 통해 규정할 예정이며 관세사등이 불성실·허위로 확인하는 경우 관세사등을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예정임. 이를 통해 관세사등과 성실신고확인대상업자가 담합하여 부정 납세 신고할 유인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나친 검토기간의 장기화는 업체의 폐업등으로 인한 관세 세원의
일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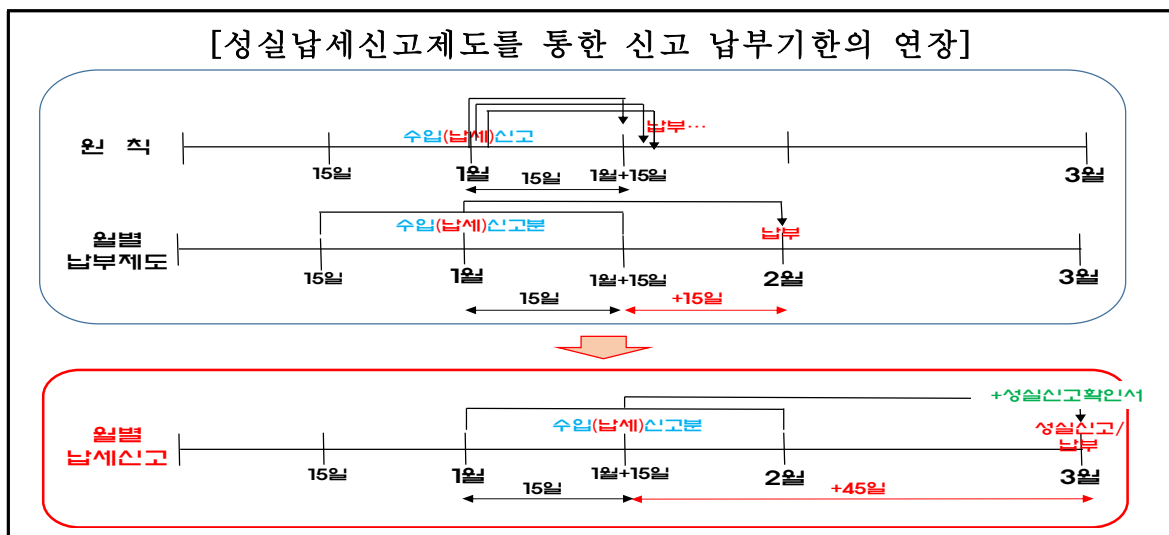
관세사등의 현실적인 확인 기간 및 세수이연효과 등으로 인한 금
융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 신고 후 1달 기간의 적정
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둘째, 개정안의 표현상 세관장에게 ‘다시 한꺼번에’ 납세신고를 하
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최초의 납세신고는 대략적으로 하고, 추후
일괄·보강하여 정확히 성실납세신고 하면 된다는 오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동 규정
은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괄적으로’ 신고하도록 하
는 제도의 취지를 담은 것으로 모든 납세신고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적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의견 또한 있으므로, 기타 법문언의 규정 방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식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마. 성실납세신고제도의 기한

- 개정안은 납부 및 신고기한과 관련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성실납세 신고를 하면서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원칙적인 납부 기한은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로 서¹⁵⁾, 개정안은 이로부터 45일을 연장하여 최대 60일간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성실납세신고제도 대상 기업들의 과세이연효과로 금융비용을 일부 절감시켜 자발적인 제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 다만, 이러한 납부기한 연장이 충분한 유인책이 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제도¹⁶⁾가

15)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16)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

있는데, 동 제도상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인정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¹⁷⁾ 그러나 개정안은 성실납세신고에 따른 유인책으로 신고에 따른 납세 기한을 수입신고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로 연장하는 혜택만 부여하고 있을 뿐 신고에 따른 명시적인 세액 공제 등의 혜택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영세무역업자의 경우 관세사등으로부터 성실납세신고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성실납세신고를 할 유인이 크지 않아 세액감증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연간 수입금액 기준 1,000만불 이상 3,000만불 미만의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57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수입 금액 기준 500만불 이상 1,000만불 미만의 업체들은 평균 260만원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7)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 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바. 성실납세신고제도의 특례

-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① 성실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가격신고를 할 수 있고¹⁸⁾ ② 납세신고를 한 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성실납세신고기한(납세신고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까지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 특례¹⁹⁾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에 따른 세액 정정의 원칙과 부합하므로 입법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음.

18) 현행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은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납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격신고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통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수입신고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해 제출하는 사항 중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으며, 가격신고 시의 제출자료 역시 수입 관련 거래 및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통해 현행법은 ① 가격신고를 수입신고와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②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 시 확보되는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데 취지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통해 관세사등의 확인을 받은 과세가격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요하지 않음.

19) 납세신고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납세 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 기한을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성실납세신고제도 금융비용 절감효과]

① 연간 수입금액 기준 1,000만불 이상 3,000만불 미만 업체*

* 22년 기준 2,647개사

구분	업체 수 (A)	납부세액 (B)	금융비용 절감기간(평균) (C)	이자율 * (D)	금융비용 절감 효과 (E) = (B) X ((C) / 365) X (D)	
					총절감액 (E)	1개 업체당 평균 절감액 (E) / (A)
합계	2,647개사	63,905억원	-	-	152억원	575만원
월별납부 이용	805개사	22,220억원	15일	3.5%	32억원	398만원
월별납부 미이용	1,842개사	41,685억원	30일	3.5%	120억원	650만원

* 금융회사 정기예금 이자율 : 관세법§38조의2⑤, 관세칙§9조의3

② 연간 수입금액 기준 500만불 이상 1,000만불 미만 업체*

* 22년 기준 3,399개사

구분	업체 수 (A)	납부세액 (B)	금융비용 절감기간 (평균)(C)	이자율* (D)	금융비용 절감 효과 (E) = (B) X ((C) / 365) X (D)	
					총절감액 (E)	1개 업체당 평균 절감액 (E) / (A)
합계	3,399개사	34,219억원	-	-	89억원	260만원
월별납부 이용	495개사	6,339억원	15일	3.5%	9억원	182만원
월별납부 미이용	2,904개사	27,880억원	30일	3.5%	80억원	275만원

* 금융회사 정기예금 이자율 : 관세법§38조의2⑤, 관세칙§9조의3

2.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신고·제출자료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의무자(§12①) ○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 신고 등 신고자 ○ <u>적재화물목록 * 제출자**</u> * 수출입을 위해 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화물의 목록 ** 선사·항공사	☐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 부여 ○ (현행과 같음) ○ <u>적재화물목록 작성자*</u> * 마스터적재화물목록: 선사·항공사 하우스적재화물목록: 화물운송주선업자 ○ 시행일: 2025. 1. 1.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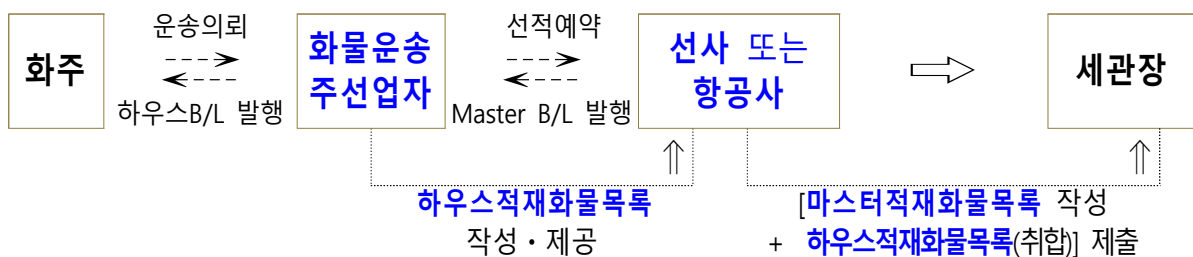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관세당국에 신고·제출하는 자료의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의무자 중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를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로 변경하여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의무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의 운송·하역 등 일체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화물의 선박·항공기 적재를 예약한 후 운송장(마스터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을 발행받고 화주에게 자기명의로 운송장(하우스 B/L 및 AWB)을 발행함. 적재화물목록은 국제무역선(기)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의 총 목록으로 마스터·하우스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내역을 근거

로 작성되므로, 화물운송주선업자 또한 적재화물목록의 실질적인 작성자임.

다만 현행법²⁰⁾은 적재화물목록 관련 증거서류의 보관의무를 제출자(선사 또는 항공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한 ‘하우스화물목록 증빙자료(House B/L, AWB)’에 대한 보관의무도 제출자(선사 또는 항공사)가 부담하고 있음. 특히 세관에 제출되는 일평균 마스터적재화물목록 수가 2만건인 반면, 하우스적재화물목록 수는 43.8만건으로 선사 또는 항공사의 증거서류 보관 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 개정안은 적재화물목록 서류 보관의무자를 적재화물목록 제출자에서 적재화물목록 작성자로 변경하여, 자료의 생산자와 보관의무자를 일치시켜 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또한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작성하는 하우스 B/L 및 AWB는 수출입화물의 통관적법성을 위한 판단의 기초자료로서 화물운송주선업

20) 「관세법」

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자의 불법행위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 자에게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적재화물목록 작성자의 자발적 법규준수 강화로 적재화물 목록의 정확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가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추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료의 작성자와 보관의무자를 일치하고 있음.²¹⁾

또한 미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운송주선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록과 장부를 체계적으로 종이 또는 전자양식으로 5년간 유지·관리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1)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 두어야 한다.

3.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관세부과 가능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 관세부과 불가(부과제척기간) (§21①) ☐ 원칙 5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 환급·감면 받은 경우 10년 ☐ <신 설>	☐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신설 ☐ (현행과 같음) ☐ ☐ 수입 무신고 시 7년 ☐ 시행일: 2025. 1. 1. ☐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입한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수입 무신고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인 5년보다 긴 7년으로 규정하여, 수입 무신고 행위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는 경우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²²⁾ 개정안은 이에 더해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²²⁾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이는 관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한 경우에 비해 세원관리
에 어려움이 있고, 무신고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를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²³⁾ 무신고 수입행
위에 대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무신고
사실 적발에도 부과제척기간 도래로 과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
를 방지하는 등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참고로,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
로 규정하고,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7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
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²⁴⁾

23) 범칙 행위(무신고 밀수)는 2012년 1월에 발생하였으나, 검찰 수사에 따른 무혐의는 2017년 7월에 처분되
어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2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
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
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4.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납세신고의무 부여(§38) ☐ (신고시기) 수입신고 시 ☐ (신고자) 수입하려는 자 ☐ (세액심사) 세관장이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신고한 세액등 심사 - <신 설>	☐ 세액심사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신설 ☐ (현행과 같음) - <u>세관장이 세액심사 시 신고서 등의 미비점 또는 오류등에 대해 보완 요구</u>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세관장이 세액심사 시 신고등의 미비점 또는 오류 등에 대해 보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관세법」은 납세신고 의무를 세관장이 부과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하고 있음.²⁵⁾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법에 따른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세액심사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²⁶⁾

25)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6)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관장의 세액심사 시 신고자가 납세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가 미
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세법」 제266조²⁷⁾에 따라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를 요구하
는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세관장의 세액심사 시 미비점 또는 오류등에 자료
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경우, 관세조사에 따
른 과세자료 요구로 세액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과세자료의
요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납세자가 세액심사를 관세조사로
오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2023년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조사와 세액심사 개념이 분리되었으므로
세액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요구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참고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기타 국세에도 세액심사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보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²⁸⁾

-
-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
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27) 「관세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
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추 두어야 한다.

28)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원칙) 부족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u>40%</u> (§42②) * ①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④ 그 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u>40%</u> (§42③)	☐ 가산세율 상향 ○ (현행과 같음) - 부족세액의 <u>40 → 60%</u> ○ (현행과 같음) - 해당관세액의 <u>40 → 60%</u> ○ 시행일: 2025. 1. 1. ○ 경과조치: (§42②)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42③)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부정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40%로 내국세 역외거래(수입부가세등)의 가산세율인 60%와 달리 낮게 적용 중이므로, 내국세 역외거래 수준으로 관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관세법」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납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9) 이는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징수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임.

과소신고 시 가산세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A) + 납부지연가산세(B)

※ 신고불성실가산세(A)는 과소신고 등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를 제재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B)는 납부기한이 지나 관세를 납부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회수하기 위한 성격이 있음.

□ 가산세율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40%의 가산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0%의 가산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관세법」은 부정행위가 수반되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40%로 규정하고 있어 관세와 내국세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상이한 상황임.³⁰⁾ 특히 관세의 과세대상 거래인 ‘수입’은 국세기본법상 ‘역외거

29)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0)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래³¹⁾에 해당하므로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가산세율을 60%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어보임.

이에 개정안은 내국세의 역외거래 수준으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100분의 60으로 상향함으로써, 납세자의 정확한 납세신고를 독려하여 자발적 법규준수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세기본법」 등 기타 법률의 역외거래와 통일된 수준의 가산세율로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1)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6.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최빈개도국 무관세 특혜(\$76③) ○ (대상) 국제연합 총회 결의에 다른 최빈개도국* * 콩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45개국 - <추 가>	☐ 적용대상 확대 ○ (현행과 같음) -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도국 졸업국가('25.1.1 전 졸업국가도 포함)로서 졸업개시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 * 구체적인 기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4. 1. ○ 적용례: 2025년 4월 1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내용) 기본세율보다 낮은 특혜관세 * 적용 * 대통령령에서 무관세 적용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최빈개도국의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한 WTO 권고를 반영하여 최빈개도국 졸업국가에 대해서도 무관세 특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및 동법에 따라 규정하는 세율로 분류³²⁾하여,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³³⁾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76조제3항은 UN의 결의

32) 「관세법」

제49조 (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33) 「관세법」

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원산지
물품에 대해 일반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³⁴⁾

□ 우리나라는 2000년 1월부터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규
정을 두어 그 대상 품목 및 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더해 제5
차 UN 최빈개도국회의에서 도하 프로그램(Doha programme of
Action for LDCs)이 의결되었음. 이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최
빈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UN에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경제다각화, 기술 이전과
능력 배양, 무역 혜택 강화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함. 또한 2023년
10월 WTO 일반이사회는 UN의 최빈개도국을 위한 도하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의 경제적 자립을 위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
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
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
을 적용한다.

34) 「관세법」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
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
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
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기존에 받던 무역 혜택(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유연하고 지속가능(sustainable)한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개정안은 WTO의 권고를 반영하여 UN 결의에 따라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에 대해 졸업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무관세 특혜등을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교역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최빈개도국 졸업국가에 대한 특혜관세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2023년 최빈국 졸업 예정 국가의 특혜관세 적용으로 인한 무관세 수입액 규모는 전체 수입액 대비 0.1%에도 미치지 못하여, 특혜관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의 규모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럽연합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내 EBA(Everything but Arms) 프로그램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최빈개도국을 졸업한 후 3년간 그 혜택을 유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³⁵⁾

35) EU Regulation No 978/2012

[2023년 최빈국 졸업예정 국가의 특혜관세 적용수입 현황]³⁶⁾

(단위) 무관세 수입액: 백만원,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 %

국가	무관세 수입액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	졸업예정일
상투메프린시페	-	-	‘24.12.12.
방글라데시	696,289	0.0831	‘26.11.23
라오스	15,730	0.0019	‘26.11.23
네팔	2,712	0.0003	‘26.11.23
솔로몬제도	11,250	0.0013	‘27.12.13
부탄(既졸업)	3,959	0.0005	‘23.12.12
소계	729,940	0.0871	
전체 수입액	838,319,906		

36) 최빈개발도상국의 지정 및 졸업은 UN총회에서 소득, 경제적 취약성등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결정하고 있어, 기존에 졸업예정국가로 결정되었더라도 총회의 결정에 따라 졸업예정 국가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있어 2024년 12월(잠정) UN총회 결정에서 상기 최빈국 졸업예정 국가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7. 계약내용과 다른 수입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계약내용과 다른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 환급(§106①1) ☐ (대상) 해당 수입 물품을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 ☐ (지정반입장소) -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세관장 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 -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 <추 가>	☐ 가산세 경감률 상향 조정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통관우체국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 등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하나, 국제우편물 수출 시 물품소재지인 통관우체국은 ‘지정 반입장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우편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반입장소에 통관우체국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관세법」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인 ‘계약상이물품’ 등에 대해 관세를 환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³⁷⁾ 무역계약에는 품질조

37)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건, 수량조건, 가격조건등 여러 조건이 약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상이물품 환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품질 조건에 위반된 물품임. 이에 대해 「관세법」 제106조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조세를 납부한 물품에 대해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相違)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되거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외장치장, 자유무역지역등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폐기가 완료된 물품을 관세 환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환급 조건 중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는 조건 중 ‘지정 반입 장소’에 통관우체국을 추가하려는 것임. 수출신고는 해당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제우편을 통한 수출신고 시의 물품소재지는 통관우체국임. 그러나 현행법은 계약상이물품을 수출을 위한 지정반입장소에 통관우체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제우편물을 통한 계약상이물품 수출 시 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정장소 반입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계약상이물품 지정 반입장소에 ‘통관우체국’을 추가하는 경우, 계약상이물품 중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수출 및 반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우체국을 반드시 경유하므로, 지정장소 반입의무를 충족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됨.

특히 현행법상 통관우체국을 보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정장소로 보고 있는 입법자의 취지를 고려할 때,³⁸⁾ 계약상이물품의 지정반입장소에 보세구역에 준하여 통관우체국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음.

38) 현행법은 보세구역을 비롯하여 지정된 장소간에만 허용되는 보세운송에서 그 지정장소에 통관우체국을 포함하고 있음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국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8.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 정비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원칙)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금지 (§111②) ☐ (예외) 재조사 가능 사유 -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 조사 필요시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또는 금품 제공 알선시 - 그 밖에 <u>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관세법 시행령」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 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과 같음) ☐ 사유 추가 - (현행과 같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관세법 시행령」에 1) 관세관청외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2)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추가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국세기본법」과 달리 「관세법」상 과세목적이 아닌 재조사 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관세환급금 조사를 위한 재조사에 대한 허용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세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조사를 허용하기 위한 위임 근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관세법」은 ‘관세조사’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

는 그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³⁹⁾, 관세조사를 통해 수출입 업체에 대하여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고 있음.⁴⁰⁾ 동법은 관세조사권의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¹⁾ 또한 동법 제111조제1항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재조사금지 원칙의 법리가 관세법의 영역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⁴²⁾

현행법은 재조사의 예외사유로 ①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④

39)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생략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40) 2023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동법 제110조 및 제110조2에 분산되어 있던 관세조사의 정의 및 범위 규정을 정비하여, 관세조사와 세액심사의 개념이 분리된 바 있음. 참고로 ‘세액심사’란 세관장은 납세신고서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세기본법」 등 기타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체계가 정비된 바 있음.

41)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42)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⑤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으며, ‘관세포탈’은 관세탈루의 결과가 납세의무자 또는 행위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임. 이와 같이 관세조사의 재조사 예외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는 것은 재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 개정안은 재조사의 예외사유 중 현행법제111조제2항제5호를 동법제111조 각호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사회환경의 변화등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인 관세조사의 재조사 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⁴³⁾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그 위임 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법 제111조는 관세조사권의 남용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제111조제2항은 관세조사의 재조사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이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제1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성만을 근거로 관세조사 재조사의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상에서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수범자로 하여금 대통령령

43) 과세당국은 「관세법 시행령」에 과세관청 외 기관이 직무상 작성·제공한 자료처리를 위한 조사는 재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반영하고, 관세환급금 결정은 재산권 보호등 납세자에게 수익적인 행위임을 고려하여 이를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을 예정 중에 있음.

등에 규정될 사안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유사한 경우’로서 예외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관련 내용등을 예시하는 방식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문의 표현을 바꾸거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9.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의무 폐지(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물품 (§155①) ☐ 외국물품 ☐ 국제무역선(기)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	☐ 내국물품을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시행일: 2025. 1. 1.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내국운송 신고대상인 물품부터 적용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국제무역선(기)을 통한 내국 운송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제무역선(기)을 통한 내국 운송 시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 보세(保稅) 상태란 국내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해 과세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함.⁴⁴⁾ 현행 「관세법」 제154조는 보세구역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⁴⁵⁾ 동법 제155조는 외국물품 및 동법제221조제1항⁴⁶⁾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⁴⁷⁾

44) 우리나라에 물품이 있음에도 과세를 유보하고 보세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① 관세채권 및 통관적법성을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여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수출물품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② 보세건설장을 운영하여 산업 건설을 지원하며 ③ 보세공장 운영을 통한 수출 지원과 고용 증대 및 ④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물류원활화와 ⑤ 보세판매장을 통한 관광진흥 및 외화획득에 그 이유가 있음.

45)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46) 「관세법」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7)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되어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③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임.

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⁴⁸⁾ 동 제도는 1949년 관세법 제정 당시 내국물품의 밀수출 방지등을 위해 보세구역의 장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통관 시스템이 온전히 구축되지 않았던 시기에 밀수출의 방지 및 유해물품의 반입 등을 제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개정안은 통관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을 통한 내국운송 시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로 원활한 물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무역선(기)으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제외하려는 것임.

□ 일반적으로 내국물품 중 보세구역 장치의무로 인해 신속한 물류 흐름이 저해되는 물품에는 입항전수입신고수리물품⁴⁹⁾이 있으며, 해당 물품은 일반적으로 신속한 통관과 원활화 물류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에 따른 물품들이나, 국제무역선(기)을 통한 내국 운송 시 보세구역 장치 의무로 오히려 원활한 물류 흐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⁵⁰⁾

48)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49) 입항전수입신고수리물품이란 동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여 물품이 입항하는 단계에서 그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의미함. 본 제도는 화물의 보세구역장치 후 수입신고라는 절차로 인한 물류지체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외국물품의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수입신고 원칙의 예외임.

50) 일례로 입항전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동일한 국제무역선(기)으로 2개 이상의 항구에 분할 하역하려는 경

□ 개정안과 같이 국제무역선(기)으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 의무를 배제하는 경우 물류 운송에서의 절차 간소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동 조항 개정 이후 시행 예정인 「국제무역선(기)를 이용한 내국물품 운송에 관한 업무관리지침」을 통해 내국물품 운송 국제무역선(기)의 선사·항공사에 내국운송신고 및 내국운송 도착 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내국물품의 밀수출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 최초 입항 시 모든 물품을 하역 후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내국운송을 위해 국제무역선 기에 다시 적재하여 운송하여야 함.

10.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기간 연장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보세창고내 물품 장치기간(\$177① (1)나) ☐ 외국물품 : 1년 + 1년 연장 可 ☐ 내국 물품 : 1년 범위	☐ 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 ☐ (현행과 같음) ☐ <u>1년 범위 →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u> ☐ 시행일: 2025.1.1. ☐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보세창고에 장치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장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도 적용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내·외국 물품 간 장치기간을 통일하기 위하여 내국물품에 대해 1년 간의 장치기간 추가 연장 가능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관세법」은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藏置)하는 기간에 대해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모두 원칙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장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⁵¹⁾

51)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그러나 내국 물품의 경우 장기 장치 수요가 있음에도 기간제한으로 인해 해당 물품을 반출 후 재장치 하는 등 불필요한 물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유통기한이 긴 냉동화물 및 의약품, 바이오제품, 초저온제품 등 이른바 콜드체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내국물품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장치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실무적으로는 장기적인 장치가 필요한 내국 물품의 경우 내국 물품의 보세창고 미반출에 따르는 과태료 처분을 회피하고자, 실물 반출입 없이 서류상으로 반출입 신고를 하는 등 본 규제로 인해 편법적인 제도 운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국 물품에 대해서도 외국 물품과 동일하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내국 물품과 외국물품간의 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으며, 창고의 탄력·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물류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내국물품의 보세구역에 장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내국 물품과 외국물품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내국물품 중 보세창고에 장치 된 물품은 일반적으로 재수출을 하거나 기업이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치 한 것으로, 수입신고의 요건으로 보세구역 장치를 원칙⁵²⁾으로하는 외국물품을

52)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장치하는 것과 장치 목적의 차이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내국물품의 장치 기간이 연장되어 수출기업등의 편의를 위해 내국물품의 보세창고 내 장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하여 통관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업체들이 보세창고의 부족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4. 검역물품
 - 5. 압수물품
 - 6. 우편물품

11. 원산지증명서(FTA의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 아·태 무역협정(APTA) 세율 적용신청 시) 발급 관련 위임근거 신설 (정부안)

현행	정부안
□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232의2③) ○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 현재 세부사항은 관세청 고시 규정 - <추가>	□ 원산지증명서 발급 운영사항 관련 위임근거 신설 ○ (현행과 같음) - 기획재정부령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세부사항 위임* *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등 * (신청기한) 원칙: 물품선적 완료전, 예외: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개정안은 양허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요청기한 및 발급 기관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관세법」, 조약, 협정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를 발급하여야 함⁵³⁾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급기관 및 요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양허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의 요청기한 및 발

53) 「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급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⁵⁴⁾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세부 사항을 법령에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가급적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당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게 되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현재 FTA 적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FTA관세법」에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신청기한 등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⁵⁵⁾

54)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FTA관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세관장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만출신고서 사본

나. 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은 영수증·선하증권(B/L)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21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의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와 제5호의 입증서류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5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지도·감독(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 ④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신 설> (§234의2)	☐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 마약류 수출입 금지 *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장에게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마약류 수출입 가능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현재 통관단계에서 불법 마약류를 단속할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마약류를 수출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속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을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등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 채권 등의 위조품·변조품 등으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제품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관세법」상 통관 보류 규정⁵⁶⁾을 근거로 통관 단계에서 단속 중임.

☐ 개정안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마약류

⁵⁶⁾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수출입 금지 품목에 추가함으로써 정부차원의 마약반입 금지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세관공무원의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입법취지가 있음.

특히 현재 관세청은 중대 마약류 밀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특정 품목 · 소량 마약류에 대해서는 처벌없이 검사 지휘만으로 세관에서 자체 보관 후 폐기하고 있으나 해당 검사 및 폐기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동 개정안과 같이 수출입 금지 품목에 마약류 등이 포함되는 경우 통관 서류 규정을 근거로 행해지는 마약 단속 및 경미 마약류에 한정하여 자체 보관 후 폐기하는 검사 방식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마약류 등의 밀수출입 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수출입 금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음.⁵⁷⁾ 그러나 본 개정안은 마약류의 밀수출입시 처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있지 않음.

□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마약류의 수출입 금지 규정은 사실상 「마약류 관리법」상의 불법수출입 규정과 경합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임. 두 조항은 「형법」 제40조⁵⁸⁾에 따른 상상적 경합관

57)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8)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계에 있는 조항으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관세법」상 상한의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마약류 관리법」상의 상한의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처벌 조항에 대한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 그러나 「마약류관리법」과 「관세법」은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세법」은 물품의 수출입 통관 관리를 통한 국경 통제기능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법익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한편,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관리 및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불법마약류를 밀수출입 시 각각 불법마약류의 ‘밀수출입’과 ‘불법마약류’의 수출입으로서 별개의 위법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해석도 가능함.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장기(징역형) 또는 다액(벌금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하므로⁵⁹⁾, 「관세법」에 마약류 등의 밀수출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할 경우 마약 관련 범죄행위의 수요를 억제 할 수 있

59)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는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수출입 범죄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규정한 「관세법」에서 불법마약류 밀수출입 시의 제재를 규정하는 경우 범죄의 경중에 상응하는 처벌 수준의 부과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등을 수출입 또는 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⁶⁰⁾하고 있고 모든 마약류 불법 수출입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⁶¹⁾, 「관세법」은 수출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한편, 범죄의 경중에 따라 통고처분등 다양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음. 본 개정안에 불법마약류 밀수출입 시 「마약류 관리법」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규정할 경우 마약류의 밀수출입의 범죄 양상에 따라 상이한 제재가 가능함을 수범자로 하여금 예측가능하게 하고, 특히 실무적으로 관세청에서 자체보관 후 폐기 하는 방식의 경미마약류 조사의 법적 근거를 보완 할 수 있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 후략

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 9. 생략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을 것이라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관세법령에서는 마약류의 수출입 금지를 명문화하여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음.

[타국 마약류 관련 입법례]

- (미국) 「관세법 시행령(19 CFR 162.61)」에 마약류의 수출입금지 규정

TITLE 19-CUSTOMS DUTIES
PART 162 INSPECTION SEARCH AND SEIZURE
Subpart F-Controlled Substances, Narcotics, and Marihuana
Sec. 162.61 Importing and exporting controlled Substances.
It shall be unlawful to import to or export from the United States **any controlled substance or narcotic drug** listed in schedules I through V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 (일본) 「관세정율법」 및 개별법에 마약류의 수출입금지 규정

(관세정율법 제69조의11) 아래에 계기된 화물은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약, 향정신약, 대마, 아편, 양귀비, 각성제 및 아편 흡연구**
- 권총, 소총, 기관총 및 포, 위 총포탄 및 부품
- 폭발물, 화약류 · 아동포르노
-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하는 물품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등

※ 각성제취제법(제13조), 아편법(제6조), 대마취제법(제4조)에 각각 각성제, 아편, 대마의 수입 금지를 별도로 규정

13.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박수민의원안
☐ 지식재산권 보호 (§235) ☐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 <추 가>	☐ 보호대상 추가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등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기술 *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 한 것	☐ 보호대상 추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기술 *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 한 것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 (통관보류)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직권으로 통관보류 가능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등	☐ (현행과 같음)
☐ (통관보류의 요청 가능)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통관보류나 유치 요청 가능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등	☐ (현행과 같음)
☐ (통관보류 및 유치해제의 요청) 요청받은 물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		

현행	정부안	박수민의원안
할 수 있되, 화주 및 수출입신고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해제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통관 허용 및 유치 해제 가능 - (예외)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붙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 - <추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 산업 기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 기술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 산업 기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 기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산업기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임을 알고 취득한 영업비밀 ○ 시행일: 이 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박수민의원안 2024. 10. 30. 제출 (의안번호 5063),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등의 해외 유출은 국경단계에서 차단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한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박수민의원안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⁶²⁾,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이하 ‘산업기술’)⁶³⁾,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⁶⁴⁾을 지식재산권에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수출입신고된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⁶⁵⁾할 수 있도록 하며, 수출입신고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거나 ②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

62)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 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하며,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에 따라 8대 분야 45개 분류 128개의 방위산업기술이 지정되어 있음(예: 고감도 레이더 송수신 기술, 어뢰 음향대향 기술 등).

6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6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65) 통관보류는 통관대상 물품 일반에 대한 통관절차의 보류를 의미하며, 유치는 여행자 휴대품이나 승무원의 휴대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용어임.

술임을 알고 취득한 기술인 경우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안은 현행법 제235조제1항에 명시된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⁶⁶⁾을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며, 수출입신고된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⁶⁷⁾은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권리자 요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거나, 세관장 직권에 의하여 통관을 보류하는 절차 등을 두고 있음.⁶⁸⁾ 그런데 이러한 지식재산권

66)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하며,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에 따라 8대 분야 45개 분류 128개의 방위산업기술이 지정되어 있음(예: 고감도 레이더 송수신 기술, 어뢰 음향대항 기술 등).

67)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6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권리 사전신고에 따른 통관보류) 법 제235조제2항·제3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권리자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 세관장은 신고자에게 수출입 사실을 통보하고, 권리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②(권리자 요청에 의한 통관보류) 동조 제4항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셋째, ③(세관장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 동조 제7항은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에 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이하 ‘방위산업기술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등을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현재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유출 시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사전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현재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⁶⁹⁾ 그러나 현행법상 방위산업기술등을 침해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이를 통관 보류하거나 유치하는 등 사전에 차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화주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요청에 의해 통관 보류되거나 유치된 물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는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으로서 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등과 ②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등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등을 추가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등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

- ▶ (주)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하려한 일당 5명 적발
- ▶ 수출 예정인 에어나이프 3대를 압수하여 해외 철강사의 부당이익 최대 6,600억원 차단

69) 자료: 관세청,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 국경에서 차단”, 2024.1.5.

이 지식재산권 등으로서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박수민의원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관세법」상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영업비밀을 포함하여 세관장에 의한 통관보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상표법」 등 개별법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져 침해 여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한 상표권 등과는 달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법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여부에 대한 세관장의 법적 판단에 의하여 통관보류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려던 자의 재산권 등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특히 현행법령상 세관장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의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로 인하여 수출입업자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방업기술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호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있으나, 「지식재산 기본법」상 정

의⁷⁰⁾에 비추어 방위산업기술등 중 영업비밀의 경우 지식 재산으로서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부안과 같이 그 보호의 범주를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방식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70)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248①) ○ (원칙) 세관장이 수리 후 수출입신고인*에게 발급 * 화주 또는 관세사 ○ (예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리 시 <u>신고인</u> 이 직접 신고필증 발급 가능	☐ 발급대상자 확대 ○ (현행과 같음) ○ <u>신고인 → 신고인(신고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 화주를 포함)</u>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도 적용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 개정안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한 수출입신고 수리 시 화주도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필증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법⁷¹⁾은 수출, 수입 또는 반송 및 입항전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242조⁷²⁾는 수출입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다수의 경우 관세사에게 수출입신고

71)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72)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필증이 발급되고 있는 상황임.⁷³⁾

□ 그러나 수출입신고필증에 대한 수요 및 활용도는 화주가 더욱 높은 상황으로, 화주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화물을 자기의 책임 아래 수입한 사람으로 세무신고, 무역금융 활용 등 수출입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필증을 제출 및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⁷⁴⁾, 신고필증은 화주의 세무회계신고, 외환 송금 및 무역금융 대출 시 증빙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⁷⁵⁾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신고인만 신고필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어⁷⁶⁾ 화주가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했을 때 관세사를 통해서만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관세사가 폐업한 경우 등 신고필증의 발급 및 재교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 처리 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화주까지 확대함으로써 수출입신고필증을 요하는 화주의 세무·회계 신고 등 행정 업무 관련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73) 현재 신고 비율은 관세사 96%, 화주 4%임.

7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75) 일례로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는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을 수출하여 관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자가 수출 신고필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76) 이는 2005년부터 운용된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을 통한 신고필증 전산발급 시행 초기에는 관세사가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관세사가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화주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11년 5월 전산발급의 전면 시행 이후에는 필증에 별도로 관세사의 인증을 요하지 않으므로, 필증 발급 대상을 신고인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낮은 상황임.

15.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254①·⑥) ☐ (대상) <u>전자상거래물품</u> ☐ (방법) <u>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u>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우선 적용 범위 ☐ 전자상거래물품은 <u>택송품·우편물의 수출입신고</u> 방법에 우선하여 특별통관 적용	☐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 <u>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u>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u> ☐ 우선적용 범위 확대 ☐ <u>수출입신고 → 수출입신고 및 물품검사</u> ☐ 시행일: 2026. 1. 1.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 통관 관리를 위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 신고 및 물품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관세법」은 전자상거래물품⁷⁷⁾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중 특송물품⁷⁸⁾과 우편물⁷⁹⁾에 대해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⁷⁷⁾ 「관세법」

제2조제19호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수출입 물품을 말한다.

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 중임.⁸⁰⁾⁸¹⁾

78)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중 ①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② 미화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고,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 신고한 특송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수입통관 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③ 물품가격이 2,0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9) 전자상거래 우편물 중 ①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또는 동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 없이 면세 통관할 수 있고 ②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으며 ③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무관히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④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이거나,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등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하여야함.

80)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목록통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간이신고)

- 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신고 등)

- 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 ②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같은 고시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1)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현장면세통관) 법 제94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또는 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 없이 면세통관 할 수 있다.

제8조(간이통관)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우편물(이하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라 한다)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다.

제9조(현장과세통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다. 다만, FTA협정관세 적용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

1.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2.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제10조(수입신고 등)

-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그러나 현행 「관세법」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탁송품 및 우편물의 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⁸²⁾, 전자상거래물품은 x-ray 전수 검사 중으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급증에 따라 통관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임.

[해외직구 통계 현황]

구 분	'21년		'22년		'23년		증감 (전년동 기대비 금액변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국	43,954	1,073	52,154	1,487	88,816	2,359	58.6
비중(%)	49.7	23.0	54.3	31.5	67.6	44.7	
홍콩	3,399	227	3,263	224	3,989	234	4.2
비중(%)	3.8	4.9	3.4	4.7	3.0	4.4	
미국	28,291	1,863	27,314	1,586	25,361	1,453	△8.4
비중(%)	32.0	40.0	28.4	33.6	19.3	27.5	
유럽	6,837	995	6,368	879	5,304	664	△24.5
비중(%)	7.7	21.4	6.6	18.6	4.0	12.6	
일본	3,509	289	4,386	331	5,247	364	9.8
비중(%)	4.0	6.2	4.6	7.0	4.0	6.9	
기타	2,390	211	2,634	217	2,727	204	△17.3
비중(%)	2.7	4.5	2.7	4.6	2.1	3.9	
합계	88,380	4,658	96,120	4,725	131,443	5,278	11.7

* (단위: 천건, 백만 US\$)

-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의 효율화를 위해 ① 전자상거래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특별 통관의 대상을 한정하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

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5.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7.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 ② 우편물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2)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⑤ 제1항은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고 및 물품검사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물품의 우선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은 탁송품·우편물의 수출입신고 및 물품검사 방법에 우선하여 특별통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 부분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전자상거래물품 중 특별통관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재 ‘전자상거래물품’으로 규정된 조문을 ‘전자상거래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개정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중 특별통관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시행령등에 따라 한정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는 현행법이 대통령령 내에서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만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⁸³⁾, 「관세법 시행령」⁸⁴⁾에서 특별통관의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침익적인 사안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를 개선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간소한 통관절차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한정하는 경우, 수입 시 명의도용

83)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4)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행위의 처벌형량을 높여 범죄의지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상 미화 150불 이하의 전자상거래물품 내 자가사용물품 중 특송물품과 우편물의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명의(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하여 상용품(사업적인 목적이 있는 물품)을 자가사용품으로 위장하는 밀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개인통관부호 도용 적발 사례]

'20년		'21년		'22년		'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	75	25	213	63	208	67	349

* (단위: 건, 억원)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물품 중 간이한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물건을 자가사용물품으로 한정하는 경우,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누리하고자 상용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는 밀수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명의대여행위죄 등의 처벌 대상을 납세신고 시로만 한정하고 있고,⁸⁵⁾ 특송품·우편물을 수입 시의 명의대여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에 따라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형량 강화를 위하여 「관세법」 제275의3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물품 중

85) 「관세법」

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한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국민들도 본 조항의 개정으로 인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되, 이를 악용하는 명의도용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관세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개인통관번호 도용 전용창구를 통해 수리된 신고 및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상용품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명의도용한 물품에 대한 선제적인 적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입신고 및 물품검사 등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 범위를 수출입신고를 포함하여 물품 검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는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현행 조문에 비해, 전자상거래물품의 신고 및 검사 방법등은 간소화되어 수범자에게 수익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을 예측가능하게 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입법취지가 있음. 또한 현재 폭증하는 택배품 및 우편물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전자상거래 물품의 물품검사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택배품·우편물의 물품 검사 방식에 우선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통관 부담이 경감되는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간이화되는 검사 결과로 위해물품의 유입

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중국 유통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물품 특송물품의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40%가량의 수출입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위해물질의 국내 반입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현재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 전수 x-ray검사를 통해 위해물품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등 엄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간이한 물품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관 검사상의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관세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등록 업체정보 및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은 세관 검사를 생략하고, 고위험물품에 검사 역량을 집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간이한 통관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위험물품에 대한 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행 「관세법」 및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는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및 우편물 중 간이한 통관절차가 배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각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특송물품 및 우편물과 같은 수준의 통관 수준임.

- 따라서 관세당국이 밝힌 바와 같이 검사역량이 집중될 고위험물품을 대상으로 현행 수준에 비해 엄격한 통관 절차가 시행될 경우,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신 설> (§254②·⑦)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 (등록대상)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아래 업체 ①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②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③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 (등록처) 관세청 또는 세관 ○ (유효기간) 3년 * 보세운송업자등 규정 준용 - (갱신신청)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 (효력상실) 폐업, 사망 등
☐ 영업등록 의무 대상 (§222①)	☐ 구매대행업자 제외
○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탁송품 운송업자 등 ○ <u>구매대행업자*</u> *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자	○ (현행과 같음) ○ <삭 제> ※ 구매대행업자(통신판매업자)를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대상으로 변경 ○ 시행일: 2026. 1. 1. ○ 경과조치: (§222①)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2026.1.1.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봄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인 통관관리를 위해 ①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간소한 방법으로 특별 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② 등록에 따른 유효기간 및 등록의 효력 상실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보세운송업자등⁸⁶⁾을 대상으로 관세청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내국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행위의 특성 상, 통관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이므로 물품의 불법유통 관리감독·관세채권의 확보등을 위해 이행하는 여러 통제 장치 중 하나임.

한편,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해외 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되었으나,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2021년 7월부터 관세청은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하였음. 현행

86)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3.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가. 선박용품
 - 나. 항공기용품
 - 다. 차량용품
 - 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 마. 용역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①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와 ②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임.⁸⁷⁾

□ 개정안은 이와 유사하게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특별통관을 적용 받으려는 업체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① 대상업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및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령하여 배송하는 자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② 등록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하거나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 해산된 경우) 등록의 효력을 상실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③ 동법 제222조의 보세운송업자등 중 직

87)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④ 생략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익물품의 총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를 영업등록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상거래업자등으로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과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첫째,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간소한 방법으로 통관을 받기 위해 등록해야하는 대상업자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⁸⁸⁾ 및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령하여 배송하는 자(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의 「전자상거래법」을 인용하고 그 대상업체를 규정하는 방식이 전자상거래업자의 모든 유형 및 관세청에서 예시하고 있는 해외직구의 유형⁸⁹⁾을 모두 포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바, 모든 해외직구는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⁹⁰⁾ 또는 ‘배송대행업자’를 거친 전자상거래로

8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為)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89) 관세청은 구매방식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이하 “해외직구”)하는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① 직접배송 ② 배송대행 ③ 구매대행으로 나누고 있음. 구매대행의 경우 2021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위임형 구매대행’과 ‘쇼핑몰형 구매대행’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법 제19조5항1항 다목에 규정되어 있음.

90)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일반적으로 약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에게 ① 사이버몰등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장소대여형 ②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보여 개정안에서 열거한 등록업체는 모든 해외직구 관련 업체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⁹¹⁾

□ 둘째, 등록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현행법상 보세운송업체등의 등록에 관한 규정과 그 기간이 동일하여 ‘등록’에 관한 법적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입법취지가 있음.

□ 셋째, 현행법 제222조의 보세운송업체등으로 규정된 구매대행업체를 영업등록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단일 업체에 대해 중복하여 등록을 요하지 않고 전자상거래업체등으로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동 개정안에 의해 간소한 통관 절차를 포기하고 전자상거래업체등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지 않는 ‘구매대행업체’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현행법은 구매대행업체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익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보세운송업체등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개정안과 같이 등록 여부를 업체의 자율에 맡긴 경우, 간소한 통관 절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인한 과세 부담의 회피

정보제공형 ③ 광고 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오픈마켓형으로 구분됨.

91) 현행법 상의 구매대행업체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업체에 포함되어 통합·관리될 것으로 보임. 또한 해외판매업체가 국경 간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온라인등에서 구입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배송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국내에 반입하므로, 전자상거래업체에 배송대행업체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경우 해외직구 거래 유형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경제적 손익을 바탕으로 구매대행업자 중 일부가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 정책 목적과 상반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간소한 통관절차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자상거래업자등’의 등록 여부는 자율성에 맡기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관세청 또는 세관의 등록의무는 유지하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지속할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7.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 (정부안)

현행	정부안
☐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거래정보 요청 가능 (§254③) ☐ (거래정보) 품명, 수량, 결제, 금액, 물품수신인 정보 등 ☐ (요청대상)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 (제공시점)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거래정보 제공 시점 확대 ☐ (현행과 같음) ☐ 관세청(세관)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 시행일: 2026. 1. 1.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인 통관 관리를 위해 거래정보 제공 대상자를 개정안에 따라 관세청(세관)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로 규정하고, 거래업자들에게 전자상거래 물품의 주문·결제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를 주문 또는 배송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거래정보의 요청 대상을 ①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⁹²⁾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전자상거래물품

⁹²⁾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

에 대해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한 등록 업체의 범주가 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②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 판매중개를 하는 자 ③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로 확대 되는 경우,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 등을 제공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특히, 해외직구품의 통관·과세에 구조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체와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플랫폼 기업등으로부터 거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⁹³⁾, 해외 판매업자가 국경 간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활용하는 ‘배송대행업자’가 개인 구매자의 거래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해외직구 거래의 핵심 주체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물품과 관련된 거래 정보등을 수입 신고 전까지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⁹⁴⁾,

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관세법」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2022.11,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94)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과 같이 정보제공시점을 ‘수입신고전까지’로 규정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부 특송 물품 등⁹⁵⁾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시점의 종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수입 전까지’로 개정하여 정보 제공시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정보 제공 가능시점을 확대하여 정보제공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95)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목록통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18.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재산 거래내역 추가
(최은석의원안, 정부안)

현행	정 부 안	최은석의원안
☐ 과세자료* 제출기관 (§264의2)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 자료 ○ 중앙관서·지자체·공공기관,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 등 ○ <추 가>	☐ 제출기관 추가 ○ (현행과 같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기관 추가 ○ (현행과 같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허가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등 * 관세법 시행령상 할당관세 추천서(농림부) 등 총 69개 자료 ○ <추 가>	☐ 제출자료 추가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1. 1.	☐ 제출자료 추가 ○ (현행과 같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전신송금 정보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최은석의원안 2024. 10. 18 제출 (의안번호 4782),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2건의 개정안은 은닉이 쉬운 가상자산을 활용한 관세 체납처분 관

리 강화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최은석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하는 과세자료에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과세자료 제출기관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중앙관서, 지자체, 공공기관,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등을 규정하고 있음.⁹⁶⁾
- 그러나 가상자산은 은행, 카드사 대비 수수료가 낮은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송시간이 짧아 무역대금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상 과세자료로 가상자산 결제내역은 입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특히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가상자산이 온전히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경우 무역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세수확보, 가격조작을 통한 관세탈루 단속, 채납자의 가상자산 은닉재산 추적 등에 활용하기 위

96) 「관세법」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20년		'21년		'22년		'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208	11	8,268	15	56,717	21	14,568

(단위:건, 억원)

□ 이에 2건의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관세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형태의 자산인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체납처분의 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소액물품 결제에 주로 이용되는 신용카드 내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등에 대해 관세체납자의 금융거래 자료 제출의무⁹⁷⁾를 부여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편의성이 높은 새로운 결제 수단인 가상자산 관련 체납자의 거래내역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유사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다만 정부 개정안은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중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

97)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52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자를 과세자료 제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정부 개정안(의안번호 2203518, 의안번호2203526)은 이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그 범주를 확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모두 신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가상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의무 대상여부가 불분명하여 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기록 중 누락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 역시 체납자의 가상자산 은닉재산 등을 추적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따라서 상기 개정안 및 최은석의원안과 같은 형식으로 「관세법」상의 가상자료제출기관의 범주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정부안 해당 규정의 조건을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종료 이후) 15년간 가상자산거래 기록을 보존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가하지는 않는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제출해야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⁹⁸⁾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할당관세 추천서 등에 대한 자료 등 총 69개의 과세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최은석의원안은 제출 과세자료의 범위에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 및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전신송금 정보(이하 “가상자산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동 정보가 관세청에 공유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채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가상자산의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현재 ‘트래블룰’⁹⁹⁾을 통해, 국내 신고된 사업자간 이전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있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외부 이전은 자율적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과세제출 대상에

98) 「관세법」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보험급여·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제27조, 제38조, 제241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제96조에 따른 감면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226조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허가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자료
4. 이 법에 따라 채납된 관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5. 제264조의2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6. 거주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에 한정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현행법상 국내 신고된 사업자 간 이전에 대해서만 트래블룰이 적용되며, 해외사업자 또는 개인지갑등에 대한 외부 이전은 송수신인이 동일하고 본인 인증등을 거쳐 지갑 주소등을 사전 등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

가상자산 전신송금 정보를 파악 할 경우 과세당국이 취합하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의 범주가 확대되어 엄밀한 세원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조세채권의 일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신송금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지나친 개인정보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채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고려할 때, 불법 무역대금 결제여부를 불문하고,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일방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로 비추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특히 관세법상 과세자료는 개인정보 침해등을 엄격하게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고,¹⁰⁰⁾ 가상자산을 통한 무역거래 대금의 결제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¹⁰¹⁾ 무역대금 관련 가상자산의 결제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신송금 정보를 제출 과세자료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

둘째, 현행 제도를 활용해서 수사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 내역의 확보가 가능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¹⁰²⁾

100) 「관세법」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01) 무역거래 지급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무역거래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무역거래 3.4%p 불과(2024.10.8.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102) 「특정금융정보법」

는 관세범칙사건 조사, 탈루혐의 확인 등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통한 무역 대금결제의 위법성이 추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특정 거래에 한정한 자산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하여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일부 실현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³⁾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 103) 다만, 개정안은 선제적으로 모든 가상자산 전신송금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무역 대금 결제 관련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수사 단계에 이르러 관련 정보를 확보 가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9.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 범위 정비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관세청 및 세관공무원은 직무 집행 시 무기 휴대 및 사용 가능 (§267) ☐ (무기) 권총 · 소총,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 범위 정비 ☐ (무기등)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 무기등* * 장비(차량등), 장구(수갑, 포승, 방패등), 분사기 및 무기(권총, 소총, 도검등)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현재 세관공무원이 휴대 및 사용 중인 무기 범위를 명확화하고 향후 수사대상 확대 등에 대응하여 무기범위를 정비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례 수준으로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⁰⁴⁾ 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특수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업무를 하는 경우¹⁰⁵⁾ 등에 무기를 휴대

104) 「관세법」

제267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1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16. 생략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및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세관공무원은 마약범죄의 수사 현장에서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피의자와 직접적인 신체를 접촉하는 상황이 다수 발
생함에 따라 직무 집행 시 본인이나 일반인의 생명 및 신체를 보
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상
황임.¹⁰⁶⁾ 그러나 현행 규정은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의 범위를
총포,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업무 시
주로 사용하는 삼단봉·수갑등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불분명한
상황임.¹⁰⁷⁾

[관세청 내 위해성 조사 장비 운용 현황]

(‘23.12월 기준, 단위 :개, *적색표시: 무기해당 여부 불분명)

구분	가스 분사 기	전자 충격 기	삼단 봉	수갑	방탄 (검)복	경광 봉	모의 탄창· 실탄 (교육용)	모의 총포 (교육용)	모의 도검 (교육용)
계	101	47	157	398	133	13	34	68	12

□ 이에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① 업무 시 사용가능한 무기 범위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기등’¹⁰⁸⁾으로 한정적으로 예시하고 ② 무기등을 사

106) 특히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공항만·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해 세관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 되었음. 당시 대검찰청과의 협의로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12종에 관한 범죄는 검찰에 인계하고, 그 외 약 500종의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세관의 특사경이 단독수사 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이후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 시행으로 검사의 마약수사권이 확대 되었으나, 세관의 마약 수사범위는 종전의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 중으로, 마약 범죄의 직접수사 현장에서 세관 공무원의 직접수사 범위는 종전에 비해 확대되었음.

107) 「관세법」

제267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② 제1항 및 제3항에서 “무기”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108)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용할 수 있는 경우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이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의 범위와 경우를 명확한 용어로서 법률상에 정의하여 관세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총포, 도검, 분사기, 충격기로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②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세관공무원들이 업무시 활용하는 무기를 모두 포괄하지 못해 현행법상 무기에 비해 낮은 수준의 도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 중 위법행위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 행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무기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②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여 규정함으로써 세관공무원이 관세법의 조사 업무등을 적법하게 수행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음. 또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세관공무원의 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무엇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지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법집행자의 적법한 행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취지가 있음.¹⁰⁹⁾

□ 둘째, 현행법과 유사한 업무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례 수준으로 세관공무원의 휴대가능 무기의 범위와 사용가능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유사 행정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구비 정도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음. 「출입국관리법」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규정에서 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무기등”)를 동 규정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⁰⁾ 현행 「관세법」 역시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109) 판례 등(2001.6.28. 99헌바 34)은 일관되게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고,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 용어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세관공무원들이 실사용하는 무기를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정립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완비하여 적법한 관세행정이 실현 될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110) 「출입국관리법」

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 등(「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

집행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직무에는 밀수출입죄를 검거하기 위한 인신의 구속등도 포함되므로 이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업무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한 입법례를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범위와 경우를 한정하는 것은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의 직무와 무기 휴대 및 사용과의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따라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개정안은 무기등의 휴대와 관련하여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공무원’에게 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관세법의 조사를 위한 세관공무원의 특사경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세관공무원들이 ‘무기등’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고 있어 남용하여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세관공무원들이 기존 규정에서는 무기임이 불분명했던 ‘무기등’을 ‘휴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무기등을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세관공무원이 무기등을 활용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특수사범경찰관 업무 및 마약류 수출입 범죄의 세관 직접수사업무 등임. 이는 「사범경찰직무법」상 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의 업무로서 모두 포괄되므로, 동 규정의 직무의 범위에 이를 준용하는 방식의 개정 필요성도 고려할 수 있음.

20.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가격조작죄 벌칙 산정 기준 (§270의2) ☐ 2년 이하 징역 또는 ☐ <u>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u>	☐ 산정기준 합리화 * 원가가 낮은(예, 0원) 수입물품 가격을 높게 신고한 경우, 물품원가 기준으로 처벌시 실효성 미흡 ☐ (현행과 같음) ☐ <u>가격조작 차액*, 물품원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u> * 신고가격 - 실제 물품 가격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현재 물품원가 대비 가격조작 차액이 큰 경우에도 벌금 산정기준을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을 가격조작 차액, 물품원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관세법」은 보정신청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 수출이나 수입·반송신고(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입항전 수입신고(법 제244조제1항)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¹¹¹⁾

¹¹¹⁾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 그러나 현행법 상 가격조작죄 처벌 시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을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의 경중이 범칙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물품가격이 0원인 물품을 5천만원 이상으로 고가신고하는 경우 조작 규모와 무관하게 처벌의 상한이 5천만원으로 동일하여 처벌이 범칙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관세 가격조작 신고 시 현행 및 개정안 벌금 비교]

(1억원으로 가격 신고시 벌금 비교)				
물품가격(원가)	조작차액	⇒	현행	개정안
7천만원	3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 이에 개정안은 ‘가격조작차액’을 벌금액 산정 기준 중 하나로 고려하여 가격조작죄의 처벌 취지에 맞게 가격 조작의 규모를 벌금의 양형 기준에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는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보조금·투자금 편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3.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21.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박성훈의원안·정부안)

현 행	박성훈의원안·정부안
☐ 명의대여행위죄 등* 처벌 (§275의3) * 관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 대여 또는 타인 명의 사용하는 행위 ○ 처벌대상 - 납세 신고 시 - <추 가> ○ 처벌형량 - 명의대여·사용 : 1년이하 징역 또는 <u>1천만원 이하의 벌금</u>	☐ 처벌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 (현행과 같음) - <u>탁송품·우편물 수입 시*</u> * 탁송품· 우편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명의도용 처벌 목적 ○ 타인명의 사용행위 형량 강화 - <u>자신 명의대여*: 1년 이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 벌금</u> * 탁송품·우편물 수입은 제외 - <u>타인 명의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u> ○ 시행일 (정부안) 2025. 1. 1. (박성훈의원안) 이 법 공포후 3개월 경과

* 박성훈의원안 2024.10.2. 제출 (의안번호 4477)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현재 탁송품 · 우편물 등으로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관세 회피등을 위해 다수의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 대한 명의도용 처벌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① 명의대여행위죄 대상에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② 타인 명의 사용행위의 처벌 형량을 「조세범처벌법」 등 유사법령을 고려하여 현재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①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②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¹¹²⁾ 이는 「관세법」이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납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¹¹³⁾,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모두를 관세탈루 조장행위로 보아 처벌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¹¹⁴⁾

□ 개정안은 타인의 명의로 납세 신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두어 명의도용으로 상용품을 자가사용품으로 위장하여 밀수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수입현황]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건수(만건)	6,358	8,838	9,613	13,145
금액(백만불)	3,759	4,664	4,736	5,293
전체수입건수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81%	85%	87%	89%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물량은 폭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수입건수 대비 전자상거래의 비중도 점증하는 추세임. 이러한

112) 「관세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113)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14) 「관세법」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2022.11,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

상황에서 해외직구 시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특송품 및 우편물을 수입하는 행위 역시 증가하
는 추세임.

[개인통관부호 도용 적발 사례]

'20년		'21년		'22년		'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	75	25	213	63	208	67	349

* (단위: 건, 억원)

□ 현재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중 150\$ 이하(한미FTA에 따른 특송물
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200\$ 이하)의 자가사용 특송
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만을 제출하며 수입신고는 생략되
고 관세와 부가세가 미부과 되며¹¹⁵⁾, 자가사용 식품, 화장품, 전기
용품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 법령의 허가·승인등 요건 구비 의무 역
시 면제됨.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 자가사용물품의 간소한 통관제도
의 이점을 악용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하여 상용품을 밀수하는 범
칙행위는 증가하는 추세임.

관세청은 개인통관번호 도용 민원이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여 도용
신고 전용창구를 신설하였고, 2023년 3월 이후에는 매월 1,000건
이상의 명의도용 범죄가 신고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명의도용 처벌대상을 '납세신고'로 한정하고 있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해외직구 사례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임. 특히 자가소비용 직구물품은 납세신고 없이 통관목록만을 제출

115)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간이신고) 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
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하면 되므로 타인 명의로 납세신고를 하는 범법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충족하지 않아 해외직구 시 명의도용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① 탁송품 및 우편물의 수입 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어 명의를 대여하여 해외직구를 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② 유사범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 폭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관세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세 및 복잡한 통관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를 관세탈루 행위로서 처벌하려는 것임. 특히 개정안을 통해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해외직구 수입이 포함되어, 기존의 법률규정 미비로 처벌이 어려웠던 타인 명의도용 해외직구 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이는 타인명의도용 해외직구의 의심건수 및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의 사전적인 억제 효과를 통해 건강한 해외직구 및 수입통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범죄의 선제적인 예방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현행 법상 동 조항이 2022년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를 관세탈루를 조장한 행위자로 보아 처벌규정을 두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 양도를 고의로 허락한 자 역시 관세탈루 조장행위자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¹¹⁶⁾

□ 둘째, 개정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납세신고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량 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년 이상의 징역 및 1천만원의 벌금을 유지하려는 것임. 이는 「관세법」상의 명의대여 처벌 형량이 명의대여를 처벌하고 있는 유사 법률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법적 정합성을 갖추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음.

「조세범처벌법」¹¹⁷⁾ 및 「지방세기본법」¹¹⁸⁾ 모두 일관되게 타인

116) 다만 타인 명의도용 해외직구는 유출된 개인정보등을 통해서 무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빈번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명의의 사용을 고의로 허락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처벌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117)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8)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해 유사 법률과의 법적 일관성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상의 명의 대여 행위 처벌형량]

법령명	처벌행위	처벌형량
조세범 처벌법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 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 도록 허락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지방세 기본법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 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업무 민간위탁 근거 정비 (정부안)

현행	정부안
☐ 세관장의 민간위탁 (§329④) ○ 보세구역 내 사업자 등록 의무 - <추가> ☐ 등록 등 업무 위탁 대상 ○ 보세운송업자 ○ <추가>	☐ 위탁업무 추가 ○ (현행과 같음) - <u>사업자 등록내용 변경 및 갱신</u> ☐ 대상자 추가 ○ (현행과 같음) ○ <u>화물운송주선업자</u> ○ 시행일: 2025. 1.1.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세관장이 민간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내용변경·갱신으로 확대 규정하여 세관장의 민간위탁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관세법」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대해서만 세관장이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세행정을 표방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당국은 보세운송업자·보세사 등의 등록업무 뿐만 아니라 내용변경, 갱신등의 단순 업무도 실무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왔음. 특히 보세운송업자의 경우 1988년부터, 보세사등록업무의 경우 2001년부터 전국 5개 지역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한국관세물류협회에 위탁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보세운송업자를 대상으로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등록·내용변경·갱신 단순업무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¹¹⁹⁾에 대해서도 등록·내용변경·갱신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내용변경·갱신에 관한 업무는 실무상 이미 위탁중이므로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업무 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한 업무 권한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내용변경·갱신 업무에 대해서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내용변경·갱신에 관한 업무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¹²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및 세관장의 등록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규정하고 있고 세관장은 등록요건 확인 등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

119)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120)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¹²¹⁾

개정안과 같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내용변경·갱신 업무가 민간위탁이 가능해지는 경우, 「관세법」 제329조제4항에서 나열한 ①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 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화물관리인 ③ 운영인 ④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됨. 이 경우 세관장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 등도 역시 민간에 위탁될 우려가 있어 과도한 행정권한의 위임이 문제 될 수 있음.

추가적으로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내용변경·갱신 업무를 위탁해온 한국관세물류협회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내용변경·갱신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12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등록신청 및 심사)

① 법 제222조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 심사시 실제운영 여부, 명의대여, 등록요건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3. 통관·보세분야 위임규정 등 조문정비 (정부안)

현행	정부안
☐ 국제무역선(기) 입항보고 시기 (§135①) ☐ 입항보고 절차 위임 근거 미비 (§135①) ☐ 출항허가 절차 위임 근거 미비 (§136①) ☐ 하역장소·통로·시기 제한 관련 위임 근거 미비 (§140⑤) ☐ 보세사 징계 등 처분기준* 위임 근거 미비 (§165⑥) ☐ * 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특허 특례부여 시* 중소·중견 기업 제한 요건** 규정 (§176의2①) * 제한 요건 갖춘 중소기업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 **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대상 (§176의2③)	☐ 입항보고 시기 명확화 ☐ 위임 근거 신설 ☐ 위임 근거 신설 ☐ 위임 근거 신설 ☐ 위임 근거 신설 ☐ 위임 근거 신설 ☐ 규정 명확화 ☐ 규정 정비

현행	정부안
○ 특허 신규 ○ 갱신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 물품 매각 전 통고 절차(§209①) ○ <u>세관장이 통고</u> ☐ 국제무역선(기)의 내국운송(§221③) ○ 세관장이 내국운송 신고 필요 - 내국운송신고 대상·신고인 등에 대한 규정 미비 ☐ 세관공무원의 수출입 및 반송물품에 대한 검사 (§246) ○ <u>관세청장에 검사대상·범위·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위임</u>	○ (현행과 같음) ○ <u><삭 제></u> ☐ 위임 근거 신설 ○ <u>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통고</u> ☐ 위임 근거 신설 ○ (현행과 같음)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물품검사 관련 위임 명확화 ○ <u>위임범위를 검사대상·범위·방법, 검사장비·시설 및 인력 양성 등 필요한 사항</u>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동법의 통관·보세분야의 위임근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크게 ①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운영 중인 고시등에 관해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위임범위를 정하는 부분(§135①, §136①, §140⑤, §165⑥, §209①, §221③, §246)과 ②조문을 정비하는 부분 (§135①, §176조의2①, ③)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절차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두고 있으나,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없이 운영 중이므로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범위내에서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권한 위임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

가 있음. (§135①, §136①)

□ 물품의 하역 제한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두고 있으나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운영중이므로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권한 위임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140⑤)

□ 보세사의 징계 등 처분기준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세관장이 보세사의 징계 등 (처분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¹²²⁾ 이와 관련하여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두고 있으나, 관련해서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부재하므로 개정안은 ‘행정조치의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령’ 내에서 규정하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권한 위임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165⑥)

□ 장치기간이 경과 된 외국물품의 통고 절차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장치기간이 경과된 외국물품을 매각 시 화주등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통고할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음.¹²³⁾ 그러나 통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상 위임 근거 없이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를 두어 실무적으로 운영 중임. 이에 개정안은 ‘통고에 관한 의무’는 법률에서 규정

122)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⑥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123) 「관세법」

제209조(통고) 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하되 수출, 수입 반송 통고의 절차 및 방법등은 고시로 위임하여 운영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범위 내에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여 권한 위임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음. (§209①)

- 국제무역선(기)의 내국운송대상과 관련하여 「관세법」은 국내항간 내국물품 운송 시 내국운송 신고만으로 가능하나 유사 법률인 「선박법」, 「해운법」은 각각 법률에 따르는 규정이 있거나 해수부 장관이 허가한 경우 및 해수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수리 받은 경우 등 일정요건 하에서만 내국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세청은 「국제무역선(기)을 이용한 내국물품 운송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두어 실무적으로 내국운송의 대상 및 절차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 법률과의 정합성 및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권한 위임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221③)

- 물품의 검사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해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관세청장이 둘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¹²⁴⁾그러나 실무적으로 상기된 사항 뿐만 아니라 검사장비·시설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등도 물품 검

124)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중이므로 개정안은 ‘검사장비·시설 및 인력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관세청장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입법 취지가 있음. (§246)

[「관세법」, 「선박법」, 「해운법」 상의 내국물품 운송요건]

구분	국제무역선을 통한 국내항 간 내국물품 운송 요건
관세법	☞ (제221조) 세관장에게 <u>내국운송 신고만으로 가능</u>
선박법	☞ (제6조) 국제무역선이 한국선박인 경우 가능. 다만, <u>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수부장관이 허가한 경우 가능</u>
해운법	☞ (제25조)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항 간 일시적 화물운송에 대해 <u>해수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수리받은 경우 가능</u> ☞ (해수부 지침) 외국적 자동차 전용운반선으로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 국제무역선의 입항 보고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제무역선(기)이 입항하였을 때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⁵⁾ 그러나 입항 물량의 증가로 ‘입항하였을 때’ 입항보고를 하는 경우 신속한 관세행정의 수행이 지체되고 있음. 이에 기타 유사 법률의 규정 방식을 고려¹²⁶⁾하고 관세행정절차(적재화물목록심사, 하선신고, 입항전 수입신고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개정

125)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은 ‘입항하려는’ 때에 입항보고를 하도록 하여 신속한 물류 흐름을 제공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135①)

- 보세판매장의 특허 특례 부여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특허보세구역의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제한 요건을 두어 규정하고 있음.¹²⁷⁾ 그러나 현행법의 구조상 중견기업만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개정안은 법 조문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화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176의2①)

¹²⁷⁾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24. 보칙 분야 위임규정 등 조문정비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 증명서, 통계, 통계자료의 열람 또는 교부절차,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322⑫)	☐ 증명서, 통계, 통계자료의 열람 또는 교부절차, <u>통계 대행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u> , 관세무역 데이터 제공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 관세행정 R&D 출연금등 지급·사용·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으로 규정 (§322의2④)	☐ 관세행정 R&D 출연금등 지급·사용·관리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준용
☐ * 현재 규정 없음	
☐ 관세정보원 설립 (§327의2)	☐ 위임 근거 신설
○ ❶~❷ 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형태, 등기, 정관, 지도감독 등	○ (현행과 같음)
○ <신 설>	❷ 관세청장이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 가능 ❸ 관세청장이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필요조치 가능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보칙 분야의 위임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관세무역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두어 법상 대행기관의 지정절차·기준·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법상 대행 기관의 지정절차·기준·해제에 관한 사항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상에 명시하여 권한 위임의 범위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② 관세행정의 R&D 출연금 등 지급·사용·관리 등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¹²⁸⁾ 관련 시행령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개정안은 이를 R&D의 출연금 등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연구개발기술혁신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③ 관세청장의 관세정보원의 지도 감독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관세정보원의 설립근거, 형태, 등기, 정관, 지도감독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유사한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법」의 입법례 수준으로 관세청장의 지도·감독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관세청장의 관세정보원에 관한 업무의 지도 감독 내용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이 제고된다는 입법취지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128) 「관세법」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